

○議長 白昌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한다.
2. “환경보전형농업”이라 함은 화학비료, 농약(살균·살충제, 생장조절제, 제초제)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등 자연적인 자재등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발효톱밥등을 이용한 축사설비로 축산을 경영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형태의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생산물”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보전형농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생산된 모든 농업생산물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 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업지원금 및 징수교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협중앙회가 환경보전형농업육성을 위한 자금대출시의 이자차액보전금 단, 이자차액보전금은 환경보전형농업의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에도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생산물의 판매장 설치등을 위한 경비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 6 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제 7 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수산유통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협약등) ①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5월이전에 농협중앙회장과 환경보전형농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조건, 조건불이행에 대한 조치방안등 익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p>②시장은 제1항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규모, 지급기간, 지급시기, 지급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농협중앙회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리는 연 7.5퍼센트이내로 한다.</p> <p>제9조(지원사항 통보) 농협중앙회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된 내용을 토대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 1월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지원내역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0조(사후관리등) ①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또는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농협중앙회등 지원받는 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농협중앙회장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환경보전형농업의 전과정을 지도·감독하고 농업생산물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원중단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항에 의한 확인 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보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li> <li>2. 농협중앙회가 환경보전형농업에 지원한 사항이 제8조 및 제9조의 협약내용과 다른 경우</li> <li>3. 농협중앙회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농업생산물에 대한 검사실시 결과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4. 농협중앙회장등이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li> </ol> <p>제12조(시행규칙) 시장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의 절차, 방법등에 관한 사항</p>	<p>과 환경보전형농업의 작목별 준비기간, 농업생산물의 검사, 출하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2조[건축물폐채류등 수집·운반업허가] ① 일반폐기물중 건축물폐채류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한다.</p> <p>②일반폐기물중 건축물폐채류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허가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한다.</p> <p>③구청장은 제2항의 허가내용을 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시에도 또한 같다.</p> <p>④구청장은 제2항의 건축물폐채류 수집·운반허가를 함에 있어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등 허가요건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간집하장확보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6. 서울特別市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 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案再議要求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 style="text-align: right;">(15時 38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 賣店및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關한條例案再議要求案을 上程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同 條例案은 1995年 3月 3日 第7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議決되어 執行機關에</p>
---	---